

(비공식 번역본)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Por.3/2563호

법인세 면제 권리와 혜택을 받기위한 요청 기한 연장

-----  
2001년 9월 3일에 고시된 종합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Por.4/2544호 법인세 면제 권리와 혜택을 사용하기전에 결과 보고 방법과 2006년 1월 10일에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Por.1/2549호 법인세 면제권리와 혜택을 사용하기전에 결과 보고 방법은 투자촉진을 받는 자들을

코로나19로 부터 구제하기위해 투자촉진법 불교년 2520년 13항과 2020년 3월 24일 내각 회의를 통해 나온 구제책을 통해 재경부의 동의를 얻어 법인세 면제 권리와 혜택을 받기 위한 P.N.D.50 제출 기간의 연장을 위해 2020년 4월에서 8월까지의 제출을 2020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지사는 결정했으며

이는 투자촉진법 불교년 2520년 31항을 따르고 이를 따라 지사는 법인세 면제 권리와 혜택 요청하는 기간을 2020년 9월 31일 이내 또는 정해진 법인세(P.N.D.50) 지불 기간이 끝나기 최소 30일 이전에 전 권리와 혜택을 요청해야 하며 이는 재경부의 조치를 따름

2020년 3월 25일에 고시

Duangjai Asawachintachit

(Ms. Duangjai Asawachintachit)

투자촉진위원회 비서장